서울특별시의회
제33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2026. 6.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효진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예술 분야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창작의 폭을 넓히고 효율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로 기능하는 반면, 어떤 분야에서는 인간 고유의 창작성과 기량이 핵심 가치인 만큼 무분별한 활용이 오히려 예술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느 한쪽의 입장을 단정하기보다, 이러한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먼저, 제3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예술인의 예술 활동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예술 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을 시장의 예술인 지원 시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 아울러,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예술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허용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활용이 창작의 보조 수단으로 권장될 수 있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고유한 기량과 표현이 평가의 핵심인 분야에서는 그 활용에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조항은 시가 그러한 판단을 사업별로 섬세하게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 이번 개정안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예술인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인공지능을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활용하는 예술인도 제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기반이 되길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